



제 416 회 국 회 (임 시 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목적 규정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 추가 등〉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45호)

2024. 7.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목적·책무 규정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추가 등	3
2.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 등	6
3.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등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등	10
4. 경비부담, 위생·안전관리 규정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포함	14
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징계사유에 포함	17
※참고자료	
- 교육청별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급식 관련 직종명칭	2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혜경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6. 17.

다. 회 부 일 : 2024. 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 (1.01%)에 달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흡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해야하는 근무조건으로 최근에는 급식실 종사자가 부족한 현상도 발생하여 학생들에게 정상적 급식을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뿐 아니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도록 함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

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임무를 부여하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 제7조의2·제7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목적·책무 규정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추가 등(안 제1조~제3조)

개정안은 「학교급식법」의 목적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할 것을 추가하고, 제7조에 따른 영양교사 및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근무장소로 하는 사람을 “학교급식 종사자”로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u>기여함을</u>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기여하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함을</u>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학교급식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u>가. 제7조에 따른 영양교사 및 조리사</u> <u>나.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u>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u>제공될</u>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 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 화의 계승· <u>발전을</u>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u>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u>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 <u>제공되고 학교급식</u> <u>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될</u> ----- ----- ----- ----- <u>발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u> <u>건강과 안전을</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최근 학교급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조리흡(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이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함을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추가하고(안 제1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이를 추가하여(안 제3조)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데(안 제2조), 이는 개정안에 따를 때 해당 용어가 반복하여 사용되며 해당 용어만으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별도의

정의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학교급식 종사자에 영양교사 및 조리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급식시설을 근무장소로 하는 사람을 포함시켰는 바, 이는 학교급식 시설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교육부와 서울시 등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학교급식 종사자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급식 종사자 등 교육공무직원의 직종 및 직종별 명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조례, 규칙, 정원 등 자치법규를 통해 각각 정하는 등 인력운영 형태가 서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상황¹⁾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대한영양사협회와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영양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으로서 법률에 ‘학교급식 종사자’로 총칭하여 명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 시도의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 직종은 (서울)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부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천) 영양사, 조리실무사, (광주)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급식보조원 등 참고자료 참조

2.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 등(안 제5조~제6조)

개정안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급식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을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2. (생략) <u><신설></u> <u><신설></u>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단서 신설></u>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u> 4. <u>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u>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 ----- 단, <u>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u> ③ ----- -----

현행	개정안
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④·⑤ (생략)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이 경우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급식시설·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하 되, 식품의 안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²⁾에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의무적 설치),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³⁾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2)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재량적 설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조리사 등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퇴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급식 질 저하 및 학생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은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심의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종사자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을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인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

3)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여는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나,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급식종사자의 1인당 식수 인원 및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에 대하여 신설하여 별도로 심의토록 할 경우, 교육청의 자치법규와 노동관계법령⁴⁾과의 이견발생으로 혼선이 야기될 수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작업환경 안전 및 종사자의 보건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학교급식’ 보다는 ‘산업안전보건’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서울시 등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법」의 제정취지, 자치법규, 노동관계법령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함.

4)

【현재 교육공무직 정원관리 등 체계】

- 교육감은 조례, 규칙, 규정 등 자치법규에 따라 급식종사자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필요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육감 소속 인력관리위원회(협의회)* 심의**를 거쳐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있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원조정계획을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다.
- 또한,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에 관하여도 이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결정**함

자료: 교육부

3.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등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등(안 제7조~제7조의3)

개정안은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등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배치기준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 기준에 따라 ----- -----. <단서 삭제>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7조의2(조리실무사 등의 배치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제7조제1항의 영양교사·조리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제7조의3(배치기준) ① 제7조제1항·제7조의2에 따른 배치기준은 학교급식

현행	개정안
	<u>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급식인원 수, 급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u> <u>② 교육감은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량 경감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배치기준 협의회를 두어 학교별 배치 인원을 늘릴 수 있다.</u> <u>③ 배치기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현행 「학교급식법」 제7조⁵⁾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정한 바 없고, 유치원 영양교사에 한하여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리실무사 등 여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배치기준 역시 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5)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개정안은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등을 모두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배치기준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교육감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배치기준 협의회를 두어 학교별 배치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별 배치 인원을 하한선으로 두고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한 배치 인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기존의 단서를 삭제하였는데, 현행 「학교급식법」 제7조제3항에서 “제1항 단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⁶⁾,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을 적절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급식인원 수는 학교 규모, 식단형태 및 메뉴, 배식형태(식당 또는 교실배식), 2·3식제공 여부, 전처리 식재료 사용 비중, 조리기구 현대화 수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여 전

6)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교육부가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이 준수토록 하는 것은 인력운영의 경직화 및 지방교육자치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도에 따라서는 이미 교육감이 자체기준에 따라 채용한 인력을 축소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시·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정원 등에 관하여는 현행과 같이 교육감이 지역·학교여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대통령령으로 일괄규정하는 것은 정부인력 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경비부담, 위생·안전관리 규정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포함(안 제8조, 제12조, 제16조)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과 위생·안전관리의 목적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경비부담 등) ① ~ ③ (생략)	제8조(경비부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 ----- ----- <u>향상</u> <u>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u> <u>을 보호하기 위한 급식시설·설비의</u> <u>보완과 확충을</u> ----- ----- -----.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생략)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u>그 밖에 학교급식의</u> ----- -----.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	② -----

현행	개정안
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u>제12조제2항의</u>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2. (생략) ③·④ (생략)	----- -----. 1. ----- ----- -----제12조제3항의-----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7)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경비부담에 관해 규정하면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8)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세척·조리,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8조제4항은 급식시설·설비의 보완과 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의 목적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를 명시하며, 안 제12

- 7)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②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8)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②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조제2항은 위생·안전관리의 전 과정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안 제8조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함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이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나,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시설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인데, 개정안과 같이 규정한다면 그 목적을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현행 「학교급식법」 제12조의 취지는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이에 포함되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교육부 및 서울시 등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종사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활동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⁹⁾하고 있어, 개별법령에 별도 규정은 개정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9)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징계사유에 포함(안 22조)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 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 ----- ----- -----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u>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현행 「학교급식법」 제22조¹⁰⁾에서는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

10) 「학교급식법」 제22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

전성 확보를 위하여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②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③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④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징계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¹¹⁾의 안전조치 또는 동법 제39조¹²⁾의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여 학교급식 중

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자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교육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 시·도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사업주가 조치할 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 법령에서 벌칙(징역 또는 벌금) 규정을 이미 두고 있어¹³⁾, 개별법령에 별도 규정은 개정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사업장과 달리 학교의 경우 사업주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므로 법체계상 맞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과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3)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생략)

참고자료

교육청별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급식 관련 직종명칭

시도	조례·규칙·규정명	직종명칭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영양사, 조리실무사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급식보조원
대전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영양사, 조리원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 급식보조
전남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경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영양사, 석식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자료: 교육부